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수휴직 분할 사용 근거 마련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7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수휴직 분할 사용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8. 5.
3. 회 부 일 : 2025.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Ⅲ. 검토의견

1. 연수휴직 분할 사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연수휴직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략)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u>한</u> 다. 8. ~ 11.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 ----- <u>하되</u> <u>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u> 8.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휴직은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휴직 사유 발생시 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허

가하는 직권휴직과 ②, ③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됨.

①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되면 임용권자는 의무적으로 휴직을 허가해야 하나, ② 청원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자가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재량적으로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③ 다만 육아, 입양, 불임·난임치료 휴직은 해당자가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함.

연수휴직은 ② 청원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자가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재량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휴직에 해당됨.¹⁾

[휴직 종류별 요건 및 허가]

구분	종류	휴직 요건	휴직 허가
① 직권휴직	1.질병, 2.병역, 3.행방불명, 4.법정의무수행, 11.노동조합 전입자	휴직 사유 발생	의무
② 청원휴직	5.유학, 6.고용, 8.연수, 9.가족돌봄, 10.해외동반, 12.자기개발	휴직 사유 발생 + 본인 의사	재량
③ 청원휴직	7.육아, 7의2.입양, 7의3.불임·난임치료	휴직 사유 발생 + 본인 의사	의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임용권자가 연수휴직 등을 재량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있으며,²⁾ 각 시·도교육청은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휴직을 운영하고 있음.³⁾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 중 육아휴직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개발휴직에 대해 재직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수휴직에 대해서는 분할 사용, 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⁴⁾

참고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에서도 연수휴직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⁵⁾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으나(14개 교육청), 재직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횟수를 제한하거나(2개 교육청), 연수휴직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1개 교육청)

4)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연수]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자기개발]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5)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6.5., p.196

□ 개정안은 시·도교육청별로 연수휴직을 운영할 때 휴직 사용을 재직 중 1회로 한정하여 학위 취득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휴직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라 연수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의 분할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적정 기간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사용하는 등 연수휴직 활용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서 연수휴직의 허가는 임용권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에 해당되므로, 실제 연수휴직 허가는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사정,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개정안을 통해 교원의 연수휴직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함.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 교육과정 안정성, 휴직 남용 방지, 교원 간 형평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연수휴직 제도는 법령에 의한 일률적 제한보다는 시·도교육청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이견없음 -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른 것은 문제이고,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